

[별표 7]

보조금 환수기준(제20조 관련)

구 분	산정 방식
전액 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보조금 교부 조건 (교부결정 사항 포함) 및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</li> <li>※ 다만,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.</li> <li>▶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</li> <li>▶ 보조금 수령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을 경우</li> <li>▶ 보조금을 수령한 국내복귀기업이 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 취소되는 경우</li> <li>▶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</li> <li>▶ 투자기업이 투자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제18조에 따른 정산에 응하지 않을 경우</li> <li>▶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</li> </ul>
부분 환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이행기간을 지킨 경우</li> <li>(1) 원칙 :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인원 평균달성률을 계산하여 환수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: 10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환수액 = 보조금 × (1 - 평균달성률)</li> <li>* 평균달성률 = <math>\frac{\text{사업이행기간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의 합}}{\text{사업이행기간}}</math></li> <li>* 연도별 고용인원달성률 = <math>\frac{\text{연평균 신규상시고용인원 유지}}{\text{신규상시고용계획인원}}</math></li> </ul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고용인원달성률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(셋째자리 이하 반올림)까지 계산</li> <li>※ 고용인원달성률 계산 시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감소된 경우에는 감소된 인원만큼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에서 차감하되, 고용인원달성률의 최하값은 0으로 함</li> <li>※ 평균달성률은 1을 초과할 수 없음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2) 예외(미환수) : ①고용인원달성률이 1미만인 해가 1개년 이하이고,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고용인원달성률이 1이상인 경우</li> </u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: 사업미이행기간의 고용인원을 0으로 처리하여 평균달성률에 따라 환수</li> </ul>